

2026년 「대덕구 배달강좌제」 운영 매뉴얼

※ 운영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배달강좌의 모든 구성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1장 총 강

제1조(목적)

- ① 배달강좌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학습을 배달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학습서비스로 “행복한 학습도시 대덕”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행 절차)

- ① 배달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 ② 학습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및 강좌신청 → 강좌선정 → 강좌실시 → 강좌평가(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 ③ 강사의 경우에는 강좌배정 → 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 강좌실시 → 강좌 운영결과보고 및 평가 → 강사료 지급 순으로 진행한다.

제2장 배달강좌 기본운영

제3조(강좌 분류) 배달강좌는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7분류표에 의한 표준 강좌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성인진로개발교육)

제4조(강좌 시간)

- ① 학습자 1인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동일 회차의 운영기간 내에 1인 1강좌로 제한한다.
- ② 강좌는 1강좌 당 최대 20시간으로 운영하되, 1주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설대관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이나 회계연도 내에 강좌를 종료해야 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5조(강좌 장소)

- ① 강좌 장소는 대덕구 관내에 한하며, 해당 장소 관련 영리 행위와 관련이 없이 배달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좌 신청 시 지정한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다.(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강좌운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 다음(강좌 운영장소로 제한되는 경우)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다.

[강좌운영 장소로 제한되는 경우]

-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배달강좌 운영 강좌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특정 집단만 출입가능하거나, 출입 연령제한이 있는 장소, 유흥시설, 사행성 관련 등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장소
 - 학습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
 - 이 외,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 ② 배달강좌 운영에 필요한 학습장소는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인 및 공공장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종교시설 및 특정 정당 사무실 등을 학습장소로 사용할 경우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종교 및 정치 이념에 일체 관여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학습장소에서의 교육활동 가능 여부는 해당 장소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 및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따르며, 강좌 장소로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해석은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강좌운영 시에는 반드시 "배달강좌 운영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습자

제6조(신청 자격)

- ①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배달강좌를 신청한다.
- ② 학습자는 1팀당 5인 이상(단, 전염병 관련 거리두기 인원 적용 시 학습가능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과반 수 이상은 대덕구민이어야 한다.
- ③ 학습자 대표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득한 후 반드시 학습자 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강좌 운영에 관해 강사 및 담당 부서와 소통한다.
- ④ 팀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강좌를 신청한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강좌의 신청은 취소되며, 강좌 운영 도중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강좌 운영이 즉시 중지된다.
- ⑤ 대덕구 생활권자는 배달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습자가 속한 기관은 대덕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곳이어야 한다.

제7조(학습에 필요한 비용)

- ① 배달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수강료 등을 지정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대덕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강사와 학습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강좌 신청)

- ①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② 강좌는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강좌 신청 제한)

- ① 학습자는 정규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좌 내용에 관한 교육을 강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
- ② 학습 특성상 전용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 1인당 1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4장 배달강사

제10조(강사 선정)

- ① 강사는 대덕구의 강사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최종 선정된 자를 말하며,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단,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모집공고 없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모든 강사는 개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조회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강사 활동을 금지한다.
- ③ 강좌를 배정받은 강사는 대덕구에 강사위촉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경력증명서는 해당 강의 종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제11조(강좌 운영)

-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학습자와 최종 협의한 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강좌일시, 학습장소, 학습인원 등 운영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홈페이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변경 계획 승인 전 운영된 강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 ④ 강사는 대덕구 배달강좌 담당부서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강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관리)

- ① 강사는 강좌 운영 시 학습자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학습자와 재료비 또는 교육내용 등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학습자에게 교육에 대한 대가로 추가의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강사는 강좌 운영 중 알게 된 학습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도용·활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배달강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강사의 사적 이익(개인 교습 수강생모집, 판매 목적의 교재 구매 등) 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강사의 영리활동을 위해 임의로 학습 팀 형성 및 활동하는 것은 강좌 선정과 점검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강좌 종료)

- ① 강좌는 회차별 정해진 기한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② 강사는 강좌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당부서가 정하는 제출경로에 따라 운영 사실과 다름 없이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강사료 청구서, 출석부, 통장 사본 등을 대덕구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료)

- ① 강사료 지급의 단위는 1시간을 60분으로 하며, 강사 모집과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강사료는 운영계획서와 동일하게 운영된 강좌에 한 해 지급되며, 종강이나 폐강된 강좌의 경우, 최종 운영 승인된 회차까지만 지급한다.

제15조(강사 준수사항)

- ① 강사는 배달강사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좌에 임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배달강사 워크숍, 의무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평생학습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대덕구는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 강사 활동에 제약을 둘 수 있다.
- ③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사 자격이 정지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필요시 유관 기관과 공유한다.
- ④ 강좌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모니터링) 및 학습자 만족도를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강사는 타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강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정 학습자의 강좌 배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강사 자격 정지는 배달강좌 운영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1회 경고 후 재발 즉시 자격 정지되며, 다음 연도 1년간 대덕구 배달 강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운영 규정 위반사항 :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 한 경우 등

제5장 강좌 선정, 강좌 배정 등

제16조(강좌 선정)

- ① 배달강좌 선정은 개설된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신청으로 최초 선정된다.
- ② 배달강좌 운영 중 필요에 따라 추첨 등을 통하여 운영 강좌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 ③ 강좌 운영 제반 요소(학습 내용, 운영장소, 필요 비용 등)에 대해 구성원 간 협의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강좌 배정)

- ① 강사가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배달강좌 수는 강사의 교육 참여 여부, 학습자 수요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학습자는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강좌 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현장 점검)

대덕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배달강좌 운영과 사후 만족도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 및 강사는 현장 점검시 요청하는 점검사항(출석현황, 학습환경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9조(강좌 폐강)

- ① 학습자와 강사의 상호 협의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강 할 수 있다.
- ② 강사 자격이 정지된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폐강(학습 종료)한다.
- ③ 운영계획서와 상이하거나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 ④ 출석률이 50% 이하로 3회 초과되는 회차부터 자동으로 폐강한다.
- ⑤ 그 외 담당 부서의 판단으로 강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